

협동조합 우선출자제도 시행 배경과 전망

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

2020.03.20.

서진선

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- ▶ 2020년 3월 5일 본회의 통과
- ▶ 주요 내용
 - ▶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허용
 - ▶ 우선출자제도의 도입
 - ▶ 신고수리, 인가 간주제 도입
 - ▶ 활동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강화
 - ▶ 휴면협동조합의 해산

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허용

▶ 참여 가능한 협동조합

- ▶ 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, 생협, 신협
- ▶ 5개 이상의 협동조합 등
- ▶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

▶ 사업범위

- ▶ 금융 및 보험업은 할 수 없음.
- ▶ 기획재정부장관의 **인가**를 받아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**공제사업**을 할 수 있음.
- ▶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해 신협의 자금공급이 가능할 것 인가?

우선출자제도의 도입

▶ 법조문

제22조의2(우선출자) ① **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**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**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**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, **우선출자의 총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.**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

2. 납입출자금 총액

③ 조합원이 제2항에 따른 우선출자에 참여할 경우, **조합원 1인의 납입출자금 총액과 우선출자 총액을 합한 금액은 협동조합이 발행한 우선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.**

④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**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.**

⑤ **우선출자에 대한 배당**은 제22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,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증서의 발행, 우선출자자의 책임, 우선출자의 양도, 우선출자자 총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우선출자제도의 도입 관련 이슈

▶ 발행 자격

- ▶ **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**
- ▶ 경영의 투명성
 - ▶ 협동조합의 정보 제공: 예) 경영공시
- ▶ 재무상태 양호
 - ▶ 수익성: 예) 영업이익률
 - ▶ 파산위험: 예) 부채비율
- ▶ 신규협동조합은 발행하기 어려움.
- ▶ '사회적협동조합은 발행할 수 없다'는 내용은 없지만 배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우선출자제도가 의미가 없음.

우선출자제도의 도입 관련 이슈

▶ 발행 조건

- ▶ ‘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’하는 것이 목적
 - ▶ 자기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계원칙에 따라 할 필요가 있음.
 - ▶ 우선출자증권의 기한이 없을 것.
 -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발행과 소각
 - ▶ 비누적 조건으로 발행될 것.
 - 판매 시 배당수익률을 보장하지 못함.
- ▶ ‘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’함.
 - ▶ 개별법 협동조합과 같이 정관이 변경되어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된 경우에는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.
- ▶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
 - ▶ 배당률은 정관이 정한 범위에서 정하게 되어 있음.
 - ▶ 법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납입출자금의 배당수익률 한도인 10%를 초과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함.

우선출자제도의 도입 관련 이슈

▶ 발행 한도

- ▶ 우선출자의 총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

2. 납입출자금 총액

- ▶ 시행령에서 자기자본을 정의할 것임.
- ▶ 두 가지 자기자본 정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, 하나는 협동조합의 자기자본과 나머지는 앞의 자기자본에서 우선출자금액을 제외한 자기자본. 위에서 얘기하는 자기자본은 후자임.
- ▶ 자기자본이 큰 협동조합에서 추가로 투자계획을 실행할 경우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됨.
- ▶ 협동조합의 민주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.
- ▶ 즉, 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.

우선출자제도의 도입 관련 이슈

▶ 모집 대상

- ▶ '조합원이 제2항에 따른 우선출자에 참여할 경우'
 - ▶ 모집대상이 조합원과 조합원 외의 자들이 참여할 수 있음.
 - ▶ 조합원과 직원을 조합의 내부이해관계자, 그 외의 자들은 외부투자자라고 볼 수 있음.
 - ▶ 내부이해관계자와 외부투자자의 발행조건과 규제가 동일할 수 있는가?
 - ▶ 공모와 사모의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(내부는 사모로 볼 수 있음).
 - ▶ 공모의 경우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더 많은 통제가 필요할 수 있음.
예) 외국의 경우 협동조합이 공모로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면 우리나라의 금감원과 같은 곳에 신고해야 함.
- ▶ 신탁은 우선출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가?
 - ▶ 주식 등의 지분증권은 매입할 수 없음.

우선출자제도의 도입 관련 이슈

▶ 모집 대상

- ▶ 조합원 1인의 납입출자금 총액과 우선출자 총액을 합한 금액은 협동조합이 발행한 우선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.
 - ▶ 조합원은 납입출자금도 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 1인은 우선출자 총액의 30% 미만으로 출자가 가능함.
 - ▶ 외부투자자는 우선출자증권 매입 한도에 관한 내용 없음.
즉, 외부투자자 1인이 우선출자증권을 전부 매입할 수도 있음.

마무리

- ▶ 협동조합의 자본조달 수단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.
- ▶ 기본방향
 - ▶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를 유지하면서 우선출자자의 이해관계를 해치지 않는 수준의 기업지배구조가 형성
 - ▶ 투자자 보호와 발행비용 감소를 위한 제도 마련
- ▶ 투자자 보호제도 및 신뢰성 향상 방안 마련
 - ▶ 조합이 갖춰야 할 정보 공개 수준, 통제제도, 관리감독 수준 등은 공모인지, 사모인지에 따라 혹은 내부이해관계자인지, 외부투자자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음.
 - ▶ 예) 투자설명서 양식 제공, 증권신고서 제출, 협동조합 회계기준과 감사시스템 도입 및 신뢰성 있는 정보의 의무공개 등
- ▶ 우선출자증권 활성화 방안은 필요한가?